

해양조사·정보업 법인 합병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합병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합병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정보업의 법인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3.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합니다) 4.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5. 시설·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7. 합병 후 법인 대표자의 사진 2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 제32조에 따른 결격사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관할기관 담당부서

신 고 서 작 성

접 수

민원사무처리부 등재

서류 심사 및 실태조사

기안 · 결재

발 급 통 보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